

멀티미디어기기(전자파적합성) 시험수수료

● 기본 수수료

단위 : 원

| 시험항목 | 제 품 구 분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소형단상 (주1) | 중형단상 (주2) | 대형단상 (주3) | 대형 3상 (주3) |
| 방사성 장애 | 300,000 | 300,000 | 500,000 | 600,000 |
| 전도성 장애 | 100,000 | 100,000 | 150,000 | 250,000 |
| 정전기방전 내성 | 100,000 | 200,000 | 350,000 | 550,000 |
|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| 300,000 | 600,000 | 800,000 | 1,200,000 |
|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 | 100,000 | 100,000 | 200,000 | 400,000 |
| 서지 내성 | 200,000 | 200,000 | 250,000 | 400,000 |
|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| 200,000 | 300,000 | 450,000 | 600,000 |
| 전원주파수 자기장 내성 | 100,000 | 100,000 | 350,000 | 500,000 |
|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 | 100,000 | 100,000 | 250,000 | 400,000 |
| 합계 비용 | 1,500,000 | 2,000,000 | 3,300,000 | 4,900,000 |
| 음압 시험 비용 | 500,000 | 500,000 | 600,000 | 800,000 |
| 방사 시험시 GHz 추가 시 | 300,000 | 300,000 | 600,000 | 700,000 |
| 통신 전도 시험시 | 200,000 | 200,000 | 400,000 | 600,000 |
| 총 합계 비용 | 2,500,000 | 3,000,000 | 4,900,000 | 7,000,000 |

(주1) 소형 : 20kg 이하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
(주2) 중형 :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
(주3) 대형 :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의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
● 추가 수수료

A. 시험 모드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 수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추가하여 산정한다.

$$\text{시험수수료} = \text{기본수수료} + \text{추가수수료} = \text{기본수수료} + \{1/2(\text{시험모드 수} - 1) \times \text{기본수수료}\}$$

B. 전화기의 잡음전력 및 음압시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.

C. 제품의 전원입력이 32A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 한다.

무선 EMC 분야 시험수수료

◎ 기본 수수료

단위 : 원

| 시험항목 | 제 품 구 분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배터리 (주1) | DC소형 (주2) | 소형단상 (주3) | 중형단상 (주4) | 대형단상 (주5) | 대형 3상 (주5) |
| 방사성 장애 | 300,000 | 300,000 | 300,000 | 300,000 | 500,000 | 600,000 |
| 전도성 장애 | N/A | N/A | 100,000 | 100,000 | 150,000 | 250,000 |
| 정전기방전 내성 | 100,000 | 100,000 | 100,000 | 200,000 | 350,000 | 550,000 |
|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| 300,000 | 300,000 | 300,000 | 600,000 | 800,000 | 1,200,000 |
|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 | N/A | 100,000 | 100,000 | 100,000 | 200,000 | 400,000 |
| 서지 내성 | N/A | 200,000 | 200,000 | 200,000 | 250,000 | 400,000 |
| 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| N/A | 200,000 | 200,000 | 300,000 | 450,000 | 600,000 |
|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 | N/A | N/A | 100,000 | 100,000 | 250,000 | 400,000 |
| 합계 비용 | 700,000 | 1,200,000 | 1,400,000 | 1,900,000 | 2,950,000 | 4,400,000 |
| 음압 시험 비용 | 500,000 | 500,000 | 500,000 | 500,000 | 600,000 | 800,000 |
| 방사 시험시 GHz 추가 시 | 300,000 | 300,000 | 300,000 | 300,000 | 600,000 | 700,000 |
| 통신 전도 시험시 | 200,000 | 200,000 | 200,000 | 200,000 | 400,000 | 600,000 |
| 총 합계 비용 | 1,700,000 | 2,200,000 | 2,400,000 | 2,900,000 | 4,550,000 | 6,500,000 |

(주1) 휴대용기기 : 내장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기기로서 외부 전원이 없는 기기

(주2) DC 소형제품 중 차량용 제품은 차량 환경에서의 과도현상 및 서지 시험비용 추가

(주3) 소형 : 20kg 이하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
(주4) 중형 :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
(주5) 대형 :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의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
◎ 추가 수수료

A. 시험 모드가 2개 이상인 경우의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외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시험 모드 수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하여 산정한다.

$$\text{시험수수료} = \text{기본수수료} + \text{추가수수료} = \text{기본수수료} + \{1/2(\text{시험모드 수} - 1) \times \text{기본수수료}\}$$

B. 전화기의 잡음전력 및 음압시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.

C. 제품의 전원입력이 32A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 한다.

D. 주요 제품별 시험 모드수는 다음과 같다.

1) WLAN a,b,g,n or Bluetooth → 1 또는 2 시험 모드(주파수 Band별 시험)

2) 휴대폰 → 6 시험 모드(음성통화, BT, WAN, Camera, MP3 or MP4, USB)

3) 중계기 → 제품에 따라 선택(1~4 시험 모드)

무선설비기기 시험수수료

단위 : 원

| 대 상 기 기 | 권장 시험수수료 |
|---|-----------|
|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| 1,500,000 |
| 간이무선국 · 우주국 ·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 | 1,500,000 |
|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| 1,500,000 |
|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이동국) | 1,300,000 |
|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기지국) | 1,300,000 |
|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중계장치) | 1,800,000 |
|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이동국) | 1,500,000 |
|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기지국) | 1,500,000 |
|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중계장치) | 2,000,000 |
|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(이동국) | 1,300,000 |
|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(기지국) | 1,300,000 |
|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(중계장치) | 1,800,000 |
|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이동국) | 1,500,000 |
|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기지국) | 1,500,000 |
|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(중계장치) | 2,000,000 |
|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| 1,500,000 |
|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| 2,500,000 |
|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| 1,500,000 |
|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| 1,500,000 |
|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| 1,300,000 |
|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| 2,000,000 |
|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| 1,000,000 |
|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| 1,500,000 |
|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| 1,300,000 |
|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(이동국) | 1,500,000 |
|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(기지국) | 1,500,000 |
|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(중계장치) | 2,000,000 |
|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| 1,300,000 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무선조정용) | 1,000,000 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데이터전송용) | 1,200,000 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안전시스템용) | 1,200,000 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) | 1,300,000 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) | 1,275,000 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중계용) | 1,500,000 |

| 대 상 기 기 | 권장 시험수수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) | 1,275,000 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이동체식별용) | 1,100,000 |
| 특정소출력 무선기기(소형기지국용) | 1,500,000 |
| RFID/USN용 무선기기 | 1,275,000 |
| 코드없는 전화기 | 1,100,000 |
|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| 1,275,000 |
|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| 1,100,000 |
| 해양경비 안전망용 무선설비 | 1,500,000 |

※ Note

1. 기종 또는 방식이 20이상인 복합무선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기기마다의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함
2. 20이상의 기능을 갖는 다음 기기의 경우 당해 기능시험마다 기본시험비의 50%를 추가 적용한다.
(단, 1개의 제품에 20이상의 복합기능이 내장될 경우 및 다량의 모드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비의 30~50%내에서 협의 적용)
 - 20이상의 입력전원을 갖는 기기(적용 예 : AC, DC, POE 등 공통전원 사용기기)
 - 운용 주파수대역이 20이상인 기기(적용 예 : 단파대용 아마추어기기)
 - 연속적 또는 단계적 출력가변기기(적용 예 : 중계기, 전력절감형기기)
 - 20이상의 전파형식을 갖는 기기(적용 예 : 제어채널을 갖는 기기)
 - 20이상의 통신방식을 갖는 기기(적용 예 : 무선LAN의 OFDM, DSSS 등)
 - 20이상의 송신 출력단을 갖는 기기(적용 예 : 무선LAN 중 다중 송신단을 갖춘 경우)
 - 20이상의 장치를 갖는 기기(적용 예 :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, 고정장치 등)
 - 20이상의 송, 수신안테나를 갖는 기기(적용 예 : 양방향중계기)
 - 기타 시험성적서가 추가로 발급될 수 있는 사항
3.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.5배, 대형은 2배, 대형 3상은 3배의 수수료를 적용
4. 부가가치세(VAT)는 별도임

전자파흡수율 시험수수료

단위: 원

| 대 상 기 기 | 구 분 | 권장 시험수수료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
| 두부 전자파 흡수율 측정 | 기본 요금 | 2,500,000 |
| | 추가 대역 | 2,500,000 |
| | 각 대역별 추가모드 | 1,250,000 |
| 몸통 전자파 흡수율 측정 | 기본 요금 | 2,500,000 |
| | 추가 대역 | 2,500,000 |
| | 각 대역별 추가모드 | 1,250,000 |

※ Note

1. 전자파 흡수율 측정은 기자재별로 시험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므로 기본요금에 대역, 모드 추가 시험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함.
2. 추가 대역에 대한 시험은 새로운 시험조건을 요구하므로 기본 요금의 70 %, 동일 대역에서 추가 모드에 대한 시험은 기본 요금의 60 % 수준의 비용을 적용함.
3. 기본요금은 1 대역, 1 모드에 대한 비용임.
4. 기자재의 무선대역/모드별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공중선전력이 20 mW 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본요금에 공중선전력이 20 mW 를 넘는 대역, 모드에 대한 추가 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다.
예) 추가 시험비용 = 추가 대역, 모드 수 X 추가대역/모드요금
5. 두부, 몸통 전자파 흡수율 측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몸통은 추가 모드로 간주하여 시험비용을 산정한다.
6. 무선방식(예, 무선랜+WCDMA+LTE 등) 이 여러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요금에 부가하여 추가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다.
7. 부가가치세(VAT)는 별도임

전기용품 EMC 시험수수료

단위 : 원

| 제품군(군별) | 적용규격 | 시험항목 | 시험비 | Category | 비고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기기기용 스위치(2번군) ·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(4번군) · 절연변압기(6번군) · 전기기기 일반제품(7번군) · 전기기기 대형제품(7번군) · 전동공구(8번군) · 직류전원장치나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기(12번군) | EMI (KN 14-1) | CE(AC 전원전도) | 100,000 | 1~4 | ※ EMI)의 방해전력, 방사성장해 방해전력에서 Fail될 때, 방사사로 측정하여 Pass 되면 방사 측정 데이터로 진행 가능함(Fail되지 않아도 방해전력과 방사 중 제조자 요청에 의해 선택 가능) |
| | | 방해전력 | 300,000 | 1~4 | |
| | | 방사성 방해 | 300,000 | 1~4 | |
| | | Click | 200,000 | 1~4 | |
| | EMS (KN 14-2) | ESD | 100,000 | 2~4 | ※ EMS) · Category 1 : 전기적인 회로가 없는 제품 · Category 2 : 전기적인 회로가 있으나 15MHz 이상의 클럭/발진 주파수를 갖지 않는 제품 · Category 3 : 15MHz 이상의 클럭이나 발진 주파수를 갖지 않는 배터리 사용 제품 · Category 4 : 제품군 1~3에 해당하지 않고 본 규격의 적용 범위에 적용 받는 모든 기기류 |
| | | RS | 300,000 | 3~4 | |
| | | EFT | 100,000 | 2, 4 | |
| | | Surge | 200,000 | 2, 4 | |
| | | CS | 200,000 | 2, 4 | |
| | | V-Dip/Interruption | 100,000 | 2, 4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(9번군) | EMI (KN 13) | 전도 | 100,000 | | ※ 기본 비용에 기능(Aux Port, USB, 외부 입력단자가 다수인 경우)이 추가될 경우 비용이 변동될 수 있음 ※ 정보/사무기기 기능이 있는 제품은 KN 22, 24 규격 추가 적용 |
| | | 방사성방해 | 300,000 | 수신기에만 적용 | |
| | | 잡음전력 | 300,000 | 관련기기(수신기외) | |
| | | 안테나 단자전압 | 200,000 | 수신기에만 적용 | |
| | EMS (KN 20) | S1 | - | AM은 제외 | |
| | | S2a | - | AV단자가 있는 제품 | |
| | | S2b | - | 안테나 단자 보유시 | |
| | | S3 | - |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RS 시험으로 대체 | |
| | | S4 | - | Car라디오 주파수가 1GHz 이상인 경우 제외 | |
| | | Keyed 캐리어 | - | 휴대폰 내성시험 | |
| | | ESD | - | 모든 기기에 적용 | |
| | | BURST | - | | |

| 제품군(군별) | | 적용규격 | 시험항목 | 시험비 | Category | 비 고 |
|--|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-----|---|
| · 정보/사무 기기 | · 직류전원장치 (안전인증전환 정보기기류)/마우스 등(소형제품)/PC, 모니터, 스캐너, 팩스 등/ 서버급 PC, ATM 복합기 등 | EMI (KN 22) | CE(Main 전원) | 100,000 | | *주1) 제품에 통신 포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|
| | | | CE(통신 포트) | 200,000 | 주1) | |
| | | | RE(30MHz~1GHz) | 300,000 | | |
| | | | RE(1GHz~6GHz) | 300,000 | 주2) | |
| | | EMS (KN 24) | ESD | 100,000 | | *주2) 제품의 최대 사용주파수가 108MHz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됨 |
| | | | RS | 300,000 | | |
| | | | EFT | 100,000 | | |
| | | | Surge | 200,000 | | |
| | | | CS | 200,000 | | |
| MF | 100,000 | 주3) | *주3) 제품이 Magnetic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| | | |
| V-Dip/Interruption | 100,000 | | | | | |
| 멀티미디어 기기 | ITE & AV 기기 | EMI (KN 32) | CE(Main 전원) | 100,000 | | *주1) 제품에 통신 포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|
| | | | CE(통신 포트) | 200,000 | 주1) | |
| | | | RE(30MHz~1GHz) | 300,000 | | |
| | | | RE(1GHz~6GHz) | 300,000 | 주2) | |
| | | EMS (KN 35) | ESD | 100,000 | | *주2) 제품의 최대 사용주파수가 108MHz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됨 |
| | | | RS | 300,000 | | |
| | | | EFT | 100,000 | | |
| | | | Surge | 200,000 | | |
| | | | CS | 200,000 | | |
| | | | MF | 100,000 | 주3) | |
| V-Dip/Interruption | 100,000 | | *주3) 제품이 Magnetic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| | | |
| 음압 시험 | 500,000 | 주4) | | | | |
| · 조명기기(11번군) (형광등, 백열구, 무전극, LED 등) | | EMI (KN 15) | CE(전도) | 100,000 | | * 컨버터가 인증받은 경우 EMI (KN 15)만 시험 * 컨버터가 인증받지 않은 경우 EMI(KN 15) / EMS(KN 61547) 시험 *EMI : 컨트롤러(디머)를 포함 하게 되면 MAX(100%), MEDIUNM(60%), MIN(20%)에서 각각 시험 *EMS : 컨트롤러(디머)를 포함하면(50±10)% 상태에서 시험 *주4) 마그네틱 소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|
| | | | RE(9KHz~30MHz) | 300,000 | | |
| | | | RE(30MHz~300MHz) | 300,000 | | |
| | | EMS (KN 61547) | ESD | 100,000 | | |
| | | | RS | 300,000 | | |
| | | | EFT | 100,000 | | |
| | | | Surge | 200,000 | | |
| | | | CS | 200,000 | | |
| | | | MF | 100,000 | 주4) | |
| | | | V-Dip/Interruption | 100,000 | | |

· 변경 및 파생모델 추가 시(필요시 시험)

*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소형을 기준으로 중형은 1.5배, 대형은 2배, 대형 3상은 3배의 수수료를 적용

- 소형 : 20kg 이하의 제품으로 1인이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- 중형 : 20kg 이상 50kg 이하의 제품으로 2인이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- 대형 : 50kg 이상의 제품으로 3인 이상의 운반/설치 가능한 제품

* KN 14 적용 제품(가정용 기기)

· 다기능 복합기기

시험기기의 기능 변환이 기기를 내부적으로 수정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, 본 기준의 다른 절이나 다른 기준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다기능 기기는 각각의 기능별로 별도 시험되어야 한다. 따라서 각 기능이 관련규격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모든 규격의 요구조건을 만족한다고 간주한다.

· 각 기능이 분리된 상태로 동작할 수 없거나, 또는 각각의 기능이 분리된 상태로 주요기능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시험기기는 동작에 필요한 기능만 각각의 적용규격의 항목만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